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운영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0. 6. 22 (목) ~ 6. 28. (수) (7일간)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1호
 - 구의회 사무국
- 사무의 범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1호
 - 구의회 사무국업무 전반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운영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 사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유남열	박남오	강두석, 광희관, 박정자, 시종덕 윤태봉, 이만식, 이종해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고
2000. 6. 28 (수)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감사방법

- 현황보고 및 청취 - 해당 부서장 보고
- 보충자료 제출요구
-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답변

7. 감사 진행 순서

-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적극적인 감사당부 및 성실한 수감자세 강조
- 선 서
- 국장인사
- 현황보고 - 감사대상사무 및 주요사업 추진실적
- 개별감사
- 공개질문답변 - 일문일답식 회의진행
- 감사결과 종합평가 및 강평

8. 감사 자료요구 사항

가. 공통사항

-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 2000년도 업무계획서
-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 및 비예산사업의 추진실적
- 2000년도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 2000년도 각종 민원(진정·청원·기타)접수처리부
- 기타 위원이 감사시 요구하는 자료

나. 의원별 감사요구자료 목록 -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9.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

10. 주요 감사착안 사항

대 상	주 요 감 사 착 안 사 항	비 고
구 의 회 사 무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의 기본운영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의회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에 관한사항 · 회의의 방청 및 참관 · 의회 청사 시설 장비관리 · 물품의 수급관리 · 청원의접수,이송 및 처리 결과 통지 	현황보고청취 질문 및 답변 서류감사 현지확인

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의장표창 수상자 심의 철저

○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의장표창 대상자에 대하여 심의를 철저히 하여 의장표창의 권위를 향상시키고 부적격자가 수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나. 의원자료실 비치 도서 보충

○ 의원자료실 비치 도서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참고자료의 부족분을 파악하여 보충하도록 할 것.

다. 의회접수 의원 우편물 신속 처리

○ 의회로 송달되는 의원관련 우편물은 의원들에게 사전연락후 내용 확인, 또는 의원의 요구대로 송달하는 등 긴급히 조치할 것.

라. 타구의정운영사례 확보 및 의정운영 적극 반영

○ 타구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의정사례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우리 구의회 의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행정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새 천년 21세기를 열어 가는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0. 6. 22 (목) ~ 6. 28 (수) 7일간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2호
 - 행정위원회 소관 전부서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 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내의 자치구 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행정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 사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노동우	이종해	강두석, 광희관, 김동철, 배기한 빈웅길, 손영상, 안주영, 유남열, 이만식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 고
'99. 11. 26 (금)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현황보고 및 청취
'99. 11. 27. (토)	제 1 감사장	행정관리국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99. 11. 28. (일)		공 휴 일	
'99. 11. 29. (월)		재 무 국	
'99. 12. 1. (수)		재 무 국 보 건 소	
'99. 12. 2. (목)		보 건 소 공개질의답변	
'99. 12. 3. (금)		공개질의답변	- 종합평가 - 강평

※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주요감사사항

대 상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감사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자체 감사와 비위조사 및 비위공무원의 징계 요구와 소청사항 처리 · 상급기관 및 외부기관 비위통보사항 조사처리 총괄 · 민원사항 조사처리 및 종합분석 · 환경순찰 관련사항처리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 감 사 현 지 확 인

대 상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p>(문화체육과)</p> <p>(여 권 과)</p> <p>(시책업무추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반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등록 및 지도감독 · 신문구독료의 적정집행사항 · 각종 홍보물 발간업무 · 유기장업(컴퓨터 게임장업)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 민간단체의 해외 교류사업 지원 · 국내외 도시 및 단체간 교류에 관한 사항 (중국, 일본, 고성군, 청양군, 영암군) · 구민 체육대회등 체육행사(대회)에 관한사항 ·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된 사항 · 영등포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발급신청 접수 및 심사 · 공백 여권 수불관리 · 분실 또는 소실반납 신고접수 및 전산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서비스 운영 기본계획 ·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현황 · 도로명 제정 및 도로구간 설정 업무 · 건물 번호부여 및 지적관리 	<p>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 감사 현 지 확인</p>
<p>재 무 국 (재 무 과)</p> <p>(세무관리과)</p> <p>(부 과 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 집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 · 행정재산의 총괄관리 · 공사도급·물품구매계약등 ·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 수입증지 수불관리 · 물품관리 및 공사물품 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오납금 환불결정 결의 및 통지 · 시·구세의 시효 및 불납결손처리 · 시·구세의 체납세액 징수 및 재산압류 ·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송처리 · 시·구세외 수입의 총괄관리 · 시·구세외 징수포상금 집행현황 · 지방세 체납조회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구세에 관한 과세자료관리 · 과세대장정리 및 관리 ·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처리 ·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책정 및 시가조사 · 개별 공시지가 적용비율결정 및 수정 · 법인의 시·구세에 관한 세원조사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총 무 과	<p>▷ 제 목 : 감사실에 기술직배치</p> <p>감사실은 시, 구의 투자사업중 5천만원 이상 사업시에는 일상감사 등을 통하여 철저한 감독을 하여야 하나 토목직만 2명 근무하고 건축직, 전기직, 설비직은 전혀없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바 부실공사를 유발할 염려가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p> <p>감사실에 기술직공무원을 추가 배치하여 기술감사시 완벽한 감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p>	
총 무 과	<p>▷ 제 목 : 인사위원회 재구성</p> <p>우리구 인사위원회의 인적구성이 현실적으로 구정에 밝지 못한 인사가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인사위원회의 인적구성은 가능한한 구정에 밝은 인사(현직 변호사, 지역의 저명인사등)가 선정되어야 할 것 이므로 재구성을 요함.</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총 무 과	<p>▷ 제 목 : 직원체련대회 제도개선</p> <p>직원의 체력단련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2회(상, 하반기) 실시하는 체련대회는 근무시간중에 실시하는 관계로 민원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며 1인당 지원예산 5,000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됨.</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일, 공휴일에 실시하도록 개선을 요하며 1인당 지원예산을 상향조정을 요함</p>	
총 무 과	<p>▷ 제 목 : 통합방위협의회 미정비</p> <p>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조례개정안에 의거 통합방위협의회로 개정되었는데 아직도 각동에 통합이 안된 동이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조례개정사항을 전동에 통보하여 조례에 맞도록 조치할것</p>	
총 무 과	<p>▷ 제 목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강화</p> <p>민원신청여론조사 결과 민원담당자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불친절공무원으로 평가된 공무원은 인사조치등 강력한 처분을 하여 경각심을 주고 분위기를 쇄신하고 친절함 모범공무원은 표창, 근무가점 등을 주어 신상필벌의 실시로 민원창구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킬것</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총 무 과	<p>▷ 제 목 : 구청사배치시 사전준비 철저</p> <p>구청사의 증축이나 실. 과 재배치시 일관성 또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지않고 배치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민원이용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추후 청사의 증축이나 재배치를 할 때에는 이용구민의 편리함을 참작하여 종합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낭비 및 민원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p>	
문 화 체 육 과	<p>▷ 제 목 : 자매결연 교류실적 저조</p> <p>우리구와 자매결연중인 3개군(영암, 청양, 고성군)과의 자매결연이후 교류실적이 저조함</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자매결연의 교류내용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행사를 실시하여 교류목적에 거양할 수 있도록 추진할것</p>	
부 과 과	<p>▷ 제 목 : 면허세고지서 송달철저</p> <p>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면허세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전출한 사업자에게 몇 년째 계속하여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어 인력 및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추후 체납자(특히 장기 체납자)에게 고지서발부시에는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사업장 또는 납세자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장미소재 또는 미거주시에는 정리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할것</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보 건 소	<p>▷ 제 목 : 보건행정 우수구 과다홍보</p> <p>우리구 보건소가 우수구로 선정된것에 대한 홍보를 지나치게 예산을 투입하여 과다 지출하였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우수구 보건소로 선정된 것은 잘한것이지만 지나치게 예산을 소요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p>	
보 건 소	<p>▷ 제 목 : 사무용집기구매 부적절</p> <p>보건소 인센티브로 받은 5억원중 일부를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사무용집기(책상, 의자, 캐비닛등)를 구매하여 교체하는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보건소의 환경미화 및 민원인 친절방안의 일환으로 집기를 교체한 것으로 보여지나 추후 사무용품 교체시에는 수리가능한 장비는 수리하여 사용하고 사용내구연한이 지난후에 구입토록 할것.</p>	
보 건 소	<p>▷ 제 목 : 노후 구급차 미교체</p> <p>보건소에서 긴급 또는 응급환자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구급차량이 내용연수가 지나 노후하여 사용할 때 매우 불편함.</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응급환자용 수송용 구급차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므로 추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교체할것</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보건 위 생 과	<p>▷ 제 목 : 청소년보호감시단 합동단속철저</p> <p>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치인 청소년보호감시단의 합동 단속을 매일 19:00부터 익일 03:00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며 단속공무원 또한 순서를 바꾸며 책임자는 확인도 하지않고 일비를 지급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근무하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추후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더라도 철저한 근무시간 준수와 책임자는 필히 근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일비를 지급할 것이며 단속반의 체제확립과 근무기강을 확립할것.</p>	
청 소 행 정 과	<p>▷ 제 목 : 재활용 판매 이행계약법위반</p> <p>구관내 각동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합하여 판매한 계약체결 사항이 제114조④제1항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담당자는 청소원이 제출한 물량과 판매금액을 확인절차없이 수기로 매주 기재한 것이 의혹이 제기됨</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계약위반사항과 수기기록한 물량 및 판매금액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해명할 것이며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외수입분야인지 조례로 정한 사항인지 확인하여 세부지침 시달요망</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도 시 관 리 과</p>	<p>▷ 제 목 :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예방조치</p> <p>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지도업무가 여러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며 동사무소 통담당공무원의 순찰일지가 폐지되어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통담당공무원에게 1차 책임이 가도록 순찰일지를 부활시키고 인허가담당(건설담당)이 철저한 순찰을 통하여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요망</p>	
<p>건 축 과</p>	<p>▷ 제 목 : 조경지역 토심1M 미적용</p> <p>시설녹지 토심 1m미적용 부분에 대하여 준공처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구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옥상조경과 지상조경(콘크리트, 아스콘)위의 토심 1m 적용규정에 담당공무원의 이해부족으로 준공처리되어 있는 곳을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할 생각은 않고 조례가 폐지되어 시정조치할 수 없다고 함.</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조경지역의 토심 1m 적용규정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교육시키고 토심 1m를 준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행정조치하고 무사안일한 담당공무원은 강력하게 시정조치해야 한다고 사료됨</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건 축 과</p>	<p>▷ 제 목 : 증축허가 부적정 처리</p> <p>영등포동3가 13번지19호 증축허가(99.5.27)처리시 공유지분자의 동의서 13매중 공유지분자가 아닌 동의서 권정자(영등포동3가 13-12 마포갈비), 이경구(동 3가 13-3 주차장)를 징구하고 동의서를 받아야할 임용진, 김영주는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98.12.3 대방세무서(직세46220-3764), 96.10.24 을지세무서(46410-1789)에 압류되었는데 해지하지 않았으며 동의서 첨부시 인감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특히 공유지일부가 국유지임에도 증축허가한 것은 허가자체가 무효로서 건축법 및 민법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것임.</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건축허가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나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고 특히 국유지를 무단사용토록 하였고 을지세무서, 대방세무서에서 압류한 사항도 해지하지 않는등 국가에 손해를 끼쳤으며 일부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은 증축허가 자체가 무효이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도 시 관 리 국 건 축 과</p>	<p>▷ 제 목 : 조경면적 기준부적격</p> <p>건축허가에 따른 조경면적의 토심은 1m이상 적용하여야 한다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아(감사 16070-790, 2000.6.21일자)현장확인한 바 조경의 토심 깊이가 65~70cm로 확인되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이러한 위법사항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법령 위반사항으로서 이를 옹호 또는 묵인한 이종헌도시관리국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조치 요구</p>	
<p>도 시 관 리 국 건 축 과</p>	<p>▷ 제 목 : 증축허가 부적정 및 건축물관리 부실</p> <p>(’99년도 행정사무감사확인시 지적된 영등포동4가 434-5, 6, 433-29호외 11필지에 소재한 신세계백화점과 관련임)</p> <p>96.8.28 증축허가(허가번호95-40) 52.89㎡(주차타워) 및 지하1층 89.25㎡, 주차장을 매장으로, 지하2층 1,638.26㎡ 주차장, 사무실, 창고, 오물처리장을 매장으로 용도변경한 ’97.10.22 증축허가(허가번호 97-237) 지하1층, 지하2층 165.82㎡ 증축분에 대하여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증축허가를 하였으며 특히 조경이 280㎡가 미완료상태에서 준공처리한 것은 건축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도시관리과, 건축과 관계공무원 징계조치</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도 시 관 리 국	<p>▷ 제 목 : 행정사무감사시 확인 및 자료미제출</p> <p>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현장확인시 지적사항인 영등포4가 434-5외 13필지 약280㎡의 조경미식재 면적에 대하여 완료하였다는 보고에 따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현장확인을 의원5명(배기환, 유남열, 손영상, 이종환외)이 현장방문하여 조경의 토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종현 도시관리국장에게 확인 의뢰하니 이를 거부하였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의원의 행정사무감사시 자료요구나 자료 미제출 등의 거부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7조제4항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및제3항,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등에 위배한 사항이므로 이종현 도시관리국장에 대하여 징계조치 요구</p>	
도 시 관 리 국	<p>▷ 제 목 : 직무상 의무위반공무원 조치</p> <p>이종현도시관리국장은 국가적인 경제위기인 IMF기간중인 97년부터 99년사이에 공무상 특별한 사유없이 10회에 걸쳐 일본, 홍콩, 프랑스, 중국, 싱가포르, 미국, 필리핀 등을 여행한 것은 국가적인 위기를 망각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는 공무원이며 또한 99년 행정사무감사기간중(99.11.26~11.29)에는 99.11.28~11.30까지 필리핀을 여행하여 행정감사기간을 3일간 연장(99.12.1~12.3)한 사실까지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이는 구의회를 우롱한 처사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제 36조5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사항으로서 법위반이며 또한 공무원이 해외여행시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득하지 않은 사항은 직무상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도태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이종현도시관리국장에 대하여 징계요구</p>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사회건설위원회 -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 하도록 하며 감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새 천년 21세기를 열어 가는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00. 6. 22. (목) ~ 6. 28 (수) (7일간)

3. 감사실시대상 및 사무

-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 해당기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2항3호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
- 사무의 범위
 -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해당사무
 -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사무

4. 감사반의 편성

- 감사총괄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가나다순)

위원장	간 사	감 사 위 원	사무보조
최재웅	시종덕	박남오, 박정자, 손병욱,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조길형, 최락희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월 일	감사장소	감사대상	비고
'99. 11. 26 (금)	영등포구청 제 2 감사장	도시관리국	- 현황보고 및 청취 - 서류확인 - 개별감사 - 현장확인 - 종합평가 - 강평
'99. 11. 27. (토)		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99. 11. 28. (일)		공 휴 일	
'99. 11. 29. (월)		생활복지국	
'99. 12. 1. (수)		건설교통국	
'99. 12. 2. (목)		건설교통국 공개질의답변	
'99. 12. 3. (금)		공개질의답변	

※ 감사일정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음.

6. 주요감사사항

대상	주요 감사사항	비고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및 관리업무 · 노인복지 관련시설 설립 및 건립 · 경로 우대중노인 교통수당에 관련된 업무 · 청소년 및 아동시설 복지사업(구립어린이집·구립독서실포함) · 장애인 복지관련 업무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 감사 현지 확인

대 상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p>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p> <p>(환경관리과)</p> <p>(청소행정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실업대책추진 상황의 관리 및 처리 등(취업정보은행운영상태) ·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 가스 안전관리 및 수급조절에 대한 종합계획 · 구인·구직 수요조사 및 취업알선 · 공공근로사업의 기획·조정 및 평가 ·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환경유발부담금 포함) ·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생활공해 (소음·진동,분진,악취등)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과정에 관한 사항 ·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비 조정, 납부에 관한 사항 · 청소 관련 세외수입의 현계에 관한 사항 · 분뇨·정화조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재활용 이행 등의 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공중 및 유료화장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차량 배치, 장비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p>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 감사 현 지 확인</p>
<p>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p> <p>(건축과)</p> <p>(지 적 과)</p> <p>(공원녹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도심권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계획 및 정비업무 · 상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전·월세 용자금 지원 및 관리 · 과태료 부과징수 등 ·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과태료(이행강제금)부과·징수 · 기존 무허가 건물관리 · 재개발 사업 관련 사항 · 건축허가 취소 및 위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등) · 구·동청사, 복지시설 등의 설계 및 시공감독 준공에 관한 사항 · 일반지역 구역내 위험건물 및 위험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승인(변경) 및 분양승인에 관한 사항 · 축적변경 및 불보합지 조사처리 · 택지소유 초과부담금 부과 ·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선정 ·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감독 · 근린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공원내 공중화장실 실패) · 가로녹지대 조성 및 유지관리 · 거리 환경미화 및 노변 꽃심기 · 체육관련시설(운동장 및 체육센터등)설치 및 유지관리 	

대 상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용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의 점용료 부과징수 · 도로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처리 ·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 · 도로점용료(공간) 및 부당이득금 조정징수 · 광고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도로 일시 사용허가 및 관리 · 가관점 등 가로시설물 유지관리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서류 감사 현지 확인
(토 목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및 보도시설물 유지관리 · 도로복구비의 부과징수 및 굴착복구공사 · 가로등, 보안등 시설의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지도감독 	
(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지역 및 수방대책 · 빗물펌프장·수문 기전설비 안전점검 계획 · 지하수개발·이용 원상복구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 체납자 징수관리 및 수납 소인 · 준설업무 관련 사항 · 재난관리계획 총괄조정 · 재난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정보전달, 공조체계 구축 	
(교통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 마을버스(한정면허)에 관한 사항 · 자전거 이용 증진 · 도로표지판 설치, 유지관리 · 건설기계등록에 관한 업무 	
(교통지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특별회계관리 · 주차단속원 지도감독(공익요원)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에 관한 사항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에 관한 사항 · 체납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정비업체 지도단속 ·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과 관련 주차장설치여부 및 운영상태 · 간이정비업소(카센타) 운영실태(폐유 등 처리 관련 점검사항)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가. 일일보고

- 감사직후 간사는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일일보고서를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나.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 본회의 상정의결

8. 시정 및 지적사항 : 별첨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사 회 복 지 과	<p>▷ 제 목 : 구립어린이집 위탁제 문제점</p> <p>구립어린이집 수탁기간이 2년이며 재위탁 서류기간 만료3개월 전에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는데 만료15일 전에 접수한 이유</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규정대로 처리할 것</p>	
환 경 과	<p>▷ 제 목 : 폐 부동액 처리</p> <p>공업사 카센타는 폐부동액 처리를 위탁업체선정으로 신고를 받는다고 되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1년중 11월, 12월은 부동액을 처리하는 기간이니 이 기간동안에 공무원 인원수를 보강하여 검사를 철저히 할것</p>	
총 무 과	<p>▷ 제 목 : 청장실내 민원대화실 설치시 절차 무시</p> <p>구청장 직소 민원실 설치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사업공사에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공사한 사례</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절차를 무시하고 한두사람의 힘으로 사업자 선정하여 공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건 축 과</p>	<p>▷ 제 목 : 대우아파트공사 민원 건</p> <p>대우아파트공사 주변 진정건이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답변)이 없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속히 처리 바람</p>	
<p>보 건 위 생 과</p>	<p>▷ 제 목 : 영업허가 적정처리 소홀</p> <p>'98. 3. 8일 내부방침에서 신길동 261번지 일대 건전 영업을 조성될 때까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유보는 영세업자 생계에 지장을 주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신길3동 261번지 일대 재정비가 완료되고 주차장 및 일반음식점이 운영되고 있는 바 기존 생맥주 2개 업소를 이유로 신규영업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내부방침을 받아 즉시 허가처리 할 것</p>	
<p>교 통 지 도 과</p>	<p>▷ 제 목 : 도로변 화물차 방치</p> <p>도신로 및 신길동 우성5차APT 뒤편 25m 도로에 대형 화물차 방치로 인한 미관저해 및 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 상존</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수리로 순찰하여 대형 화물차가 주차할 수 없도록 계속 단속할 것이며,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영등포구에 대형 화물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강구</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청 소 행 정 과	<p>▷ 제 목 : 재활용센터 점검 소홀 (당산동 3가 48번지)</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시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여 자원재활용품을 구민들이 알뜰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p>	
총 무 과	<p>▷ 제 목 : 보건소 인센티브 지원금 활용 문제</p> <p>대상사업인 직원휴게실 설치의 2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담당직원의 검토사항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정된 사태</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추후 사업자 선정시 세밀한 검토와 전문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할 것</p>	
영 등 포 2 동 당 산 2 동 신 길 7 동	<p>▷ 제 목 : 동별 불법주·정차단속 실적 상이</p> <p>2000.1~5월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을 확인해보니 영등포2동(1,508건 6,032,000원), 당산2동(80건 3,200,000원), 신길7동(8건 320,000원)을 동별로 단속실적이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동별 불법 주·정차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우수동인 영등포2동은 기관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단속실적이 부진한 신길7동, 당산2동은 앞으로 이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경고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건설관리과</p>	<p>▷ 제 목 : 도로점용료 미부과</p> <p>영등포 동부상가 및 중앙상가내 도로 부지 2000여 평에 점포 500여개 도로점용 미부과(19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며, 1999.7.24 재래시장내 도로불법점용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부과 징수 철폐토록 서울시장이 지시하였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철폐하게 조사한 후 부당이득금 부과하여 구 수입증대 할 것</p>	
<p>건설관리과</p>	<p>▷ 제 목 : 문래동 제방부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철폐 (1999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부과면적이 514.6㎡중 117㎡는 문래동1가 129 이정호 1인에게 부과하고 있어 누락된 면적은 5년 소급하여 변상금 부과하도록 할 것.</p>	
<p>사회복지과</p>	<p>▷ 제 목 : 사회복지시설 위험 상존</p> <p>영유아보육법 제4호 보육시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층 이상 또는 지하실 등에도 설치가능하나 비상계단이나 영유아용 비상 미끄럼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도 이용하니 위험이 있는 시설은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할 것 (특히 가스보일러 시설은 안전을 위해 외부에 설치할 것)</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p>청 소 행 정 과</p>	<p>▷ 제 목 : 생활폐기물 처리 지연</p> <p>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는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에 정한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대항지역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나 대항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2일에 1회 수거하므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계약체결시 하절기에는 매일 수거토록 조치할 것</p>	
<p>사 회 복 지 과</p>	<p>▷ 제 목 : 종교시설 부설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적정 여부</p> <p>종교시설 부설어린이집 보조금지원은 양평동교회 외 6개 어린이집에 총 336,531,970원을 지원하였음</p> <p>(양평동교회 77,904,230원, 영등포교회 42,583,970원, 우리어린이집 24,831,460원, 성락어린이집 51,996,600원, 벨엘교회어린이집 29,694,620원, 도림교회어린이집 71,246,580원, 한남어린이집 38,274,510원)</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면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기 바람.</p>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사회복지과	<p>▷ 제 목 : 민간어린이집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p> <p>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신상카드가 없으므로 현장 조사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신상카드 비치토록 시정요망</p>	
건설관리과	<p>▷ 제 목 : 도로변 무허가 카센타 단속 미흡</p> <p>우리 구 관내 20m 도로변에 무허가 카센타에서 타이어 등을 수리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대림지역 횡단보도 앞 가로수 나무와 경계석 낮추기가 안되어 주민들의 보행불편과 장애인들의 보행에 어려움이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집중단속 할 것</p>	
환경관리과	<p>▷ 제 목 : 방림방적 부지 LG건설 현장 비산먼지 과다 배출</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최근 지점별 대기 오염도 비교 결과 건축기간에 급상승하였으므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담당 임명할 것 2. 세륜, 살수로 인한 먼지발생 방지 3. 환경인식(교육 및 홍보)등이 결여되었으므로 담당부서에서 상기사항을 해당업체(LG건설)에 즉시 조치토록 지도할 것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청소행정과	<p>▷ 제목 : 청소행정과 조치사항 허위보고 및 늦장 행정</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의 인수인계 철저를 기할 것 2. 시의 적절한 행정처리로(소멸화기기 AS)주민 편의 제공 3. 입찰과정에서부터 예가 산정하고 과당경쟁을 피하여 원만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건설관리과	<p>▷ 제목 : 이면도로 단속부진으로 인한 통행 불편</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획적, 지속적 정기순회(1월 1회) 적발 2. 모범등 선발(INCENTIVE) 3. 직원교육 	
토목과	<p>▷ 제목 : 과속방지턱 공사 문제</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규격이 맞지 않으므로 재차·삼차 작업으로 교통문제 등 민원발생에 대하여 감시감독 및 교육으로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p>	
건축과	<p>▷ 제목 :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장정리 촉구</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장의 내용과 건축물관리대장과 대조하여 정확한 사항을 정리, 건축물부설주차장 대장 정리</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총 무 과	<p>▷ 제 목 : 동장 관내순찰 일지 기록 미비</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장은 관내 순찰 강화하여 지역 내 제반 문제점 중점처리 요망 ○ 순찰일지를 검토한바 형식적인 면이 있어 재검토 대상이 됨. 	
총 무 과	<p>▷ 제 목 : 동청사 부지 소유권문제</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동청사 부지가 국유지, 사유지 등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바 동청사 부지를 구 소관부지로 조속한 시일에 양여 및 재정여건을 갖추어 조속 정리 요망 	
토 목 과	<p>▷ 제 목 : 경인고속도로 입구 거성파스텔 아파트 앞(한 전 변전소 옆) 방음벽 설치 검토 요망</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거성파스텔 아파트 주민 숙원 사업인 방음벽 설치 요망</p>	
토 목 과 청 소 행 정 과	<p>▷ 제 목 : 양평동5가 1-3 도로상 도로기능 확보하여 주민편의 제공 요망</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양평동5가 1-3 도로상에 있는 주선기업(청소대행업체) 작업장 정리로 도로기능 확보 요망</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공 원 녹 지 과	<p>▷ 제 목 : 대방천변 도로 가로 공원화 계획</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대방천변 도로 가로 공원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가로조성으로 지역 주민 정서 함양 제고 요망</p>	
청 소 행 정 과	<p>▷ 제 목 : 성산대교 남단 청소차량(청소대행업체) 적법 여부</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성산대교 남단 청소차량이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 조치 요구</p>	
토 목 과 건 설 관 리 과	<p>▷ 제 목 : 양평동5가 18, 19, 39앞 도로 기능확보</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양평동5가 18, 19, 39앞 도로기능 확보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없게 도로 신설요망</p>	
건 설 관 리 과	<p>▷ 제 목 :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촉구</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년도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대하여 각 동별로 분류하여 징수 방안 강구 2. 과년도 도로점용료 체납분 독려 촉구 	

대상기관	감사지적사항	비고
토목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p>▷ 제목: 가드레일 설치 및 횡단보도 확장 (양평동3가 80번지 2호 앞 횡단보도)</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① 양평중학교 및 양화중학교, 당서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인 횡단보도 양 옆면에 가드레일 설치하여 학생들의 등 하교시 교통사고로부터 미연에 방지 대책 요구</p> <p>② 횡단보도 이전으로 이전 전 위치에 도로경계석 설치 및 석봉 이전 설치 요구</p> <p>③ 횡단보도 앞 대기장소 확대하여 대기장소 확대로 인한 도로점용 축소 요망</p>	
교통행정과	<p>▷ 제목: 버스 승차대(비가리개) 설치 지연</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2000년 예산 편성시 어렵게 편성한 예산을 아직도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아 주민의 불편 및 원성을 사고 있음</p> <p>주민을 위한 시설물이므로 신속히 발주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기 바람</p>	
사회복지과	<p>▷ 제목: 신축 경로당 내부 집기 예산 누락</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신축 경로당 내부에는 노인분들에게 꼭 필요한 각종 생활집기가 건물 준공과 동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사전에 소요예산 편성 조치하기 바람</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사 회 복 지 과	<p>▷ 제 목 : 각종공사 시행 및 물품구매 서류 보관 미흡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어린이집 보수공사 시행문서 등은 시행하는 주관부서에서 서류(사본)를 보관하여 공사전후에도 항상 검토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p>	
신 길 6 동	<p>▷ 제 목 :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처리 지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신청자에 대하여 처리기간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보호에 소홀함. 따라서 조사 및 결정시까지 장시간 소요시 신청자에 대하여 중간통지 등의 배려를 허가바람</p>	
관 련 국 · 과	<p>▷ 제 목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청문(의견제출) 제도의 행정편의지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유홍업소 단속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단속 등 각종 행정청 주관 단속시 피단속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반론원을 행사코자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나 인선공무원의 조사 전문성부족과 편견으로 반론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제도적으로나 내부적인 방침으로 시정노력 요함.</p>	

대 상 기 관	감 사 지 적 사 항	비 고
환경 관리 과	<p>▷ 제 목 : 오·폐수처리업체 지도점검 소홀</p> <p>환경관리과장 및 담당직원을 대동하여 관내 63개의 업체 중 5군데를 선정 점검한 결과 시설(정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나 이의 활용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99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문제인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사료 되고, 감사시 오폐수 지적업소가 7군데라고 허위복명으로 감사위원을 우롱하여 복명되지 않은 업체를 방문 감사한 결과 탁상행정으로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차후 이 문제가 재론되지 않게 지속적인 지도점검은 내실을 기할 것</p>	
사 회 복 지 과	<p>▷ 제 목 : 노인복지 카드제 운영 재검토</p> <p>시정 및 처리요구사항</p> <p>○4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카드제운영과 관련, 면밀히 현장점검과 노인들과 직접 면담하여 여론을 수렴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 경노우대카드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과 호응이 극히 적고 -활용실적 또한 극히 미미하여 -복지카드를 활용한 노인들 또한 정상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여 불만을 토로하는 등 본제도가 비현실적으로 성과가 없음은 물론 행정기관의 생색용 제도로 판명되었으니, 즉시 운영문제를 재검토 할 것이며, 노인복지사업추진시 우선 경로효친사상에 부합이 되도록 하고 반드시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